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개정안 회부(2024년 6월 28일) 이후인 2025년 4월 22일 법률 제20932호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어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동 법률은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 대상으로 하며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과 조문 체계 및 내용이 상이함.

이에 개정안의 내용을 법률 제20932호에 반영하고 일부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모두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

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는”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법률 제20932호	개정안	수정안
제6조(결격사유)(생략)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생략) ③ <u>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u> 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6조(결격사유)(현행과 같음)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법률 제20932호와 같음) ③ <u>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 ----- ----- ----- ----- --.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생략)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생략)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현행과 같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법률 제20932호와 같음)

재지를 관할	-----
하는 시·도	-----
경찰청장 또	-----
는 경찰서장	-----
에게 「형의	-----
실효 등에 관	-----
한 법률」 제	-----
6조에 따른	-----
범죄경력조회	-----
를 요청할 수	-----
있다. 다만,	-----
아 이 돌 봄 사	-----
또는 육아도	-----
우미로 활동	-----
하려는 사람	-----
이 범죄경력	-----
조회 회신서	-----
를 <u>제10조의4</u>	---- <u>아 이 돌 봄</u>
<u>에 따른 아이</u>	<u>서비스제공기</u>
<u>돌봄광역지원</u>	<u>관</u> -----
<u>센터 또는 제</u>	-----
<u>11조의2에 따</u>	-----
<u>라 등록된 아</u>	-----
<u>이돌봄서비스</u>	-----
<u>제 공 기 관 에</u>	-----
직접 제출하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
관-----

[illegible]

된다.	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 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③ (생 략)	④ (생 략)	③ (현행과 같 음)	④ (법률 제2 0932호와 같 음)
제10조의4(아이 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생 략)	제10조의4(아이 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생 략)	제10조의4(아이 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현 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 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법 률 제20932호 와 같음)
② 광역지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② 광역지원센 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② ----- ----- ----- -----.
<u>1. 아이돌보미</u> <u>채용, 근로</u> <u>계약 체결</u> <u>및 복무관리</u>	<u>1. 아이돌봄사</u> <u>(제 11 조 에</u> <u>따른 지정</u> <u>아이돌봄서</u>	<u><삭 제></u>	<u><삭 제></u>

	<u>비스제공기</u> <u>관에 배치하</u> <u>는 아이돌봄</u> <u>사에 한정하</u> <u>다) 채용, 근</u> <u>로계약 체결</u> <u>및 복물관리</u>		
<u>2. 아이돌봄서</u> <u>비스 제공</u> <u>중 안전사고</u> <u>로 인하여</u> <u>생명·신체</u> <u>에 피해를</u> <u>입은 아이돌</u> <u>보미와 아이</u> <u>에 대한 손</u> <u>해배상보험</u> <u>가입 등 필</u> <u>요한 안전</u> <u>조치</u>	<u>2. 아이돌봄서</u> <u>비스(제11조</u> <u>에 따른 지</u> <u>정 아이돌봄</u> <u>서비스제공</u> <u>기관에서 제</u> <u>공하는 아이</u> <u>돌봄서비스</u> <u>에 한정하</u> <u>다) 제공 중</u> <u>안전사고로</u> <u>인하여 생명</u> <u>·신체에 피</u> <u>해를 입은</u> <u>아이돌봄사</u> <u>와 아이에</u> <u>대한 손해배</u> <u>상보험 가입</u> <u>등 필요한</u>	<u><삭 제></u>	<u><삭 제></u>

	<u>안전 조치</u>		
3. ~ 6. (생략)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법률 제20932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법률 제20932호와 같음)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u>광역지원센터</u> 소속 <u>아이돌보미</u> 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u>아이돌봄서비스</u> 제공기관은 <u>광역지원센터</u> 소속 <u>아이돌</u> <u>봄사</u> 를 지정 <u>아이돌봄서비스</u> 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 <u>아이돌보미</u> ----- ----- ----- -----.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 ----- - <u>아이돌봄사</u> - ----- ----- -----.
②·③ (생략)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법률 제20932호와 같음)
< <u>신 설</u> >	< <u>신 설</u> >	④ <u>서비스</u> 기관은 <u>아이돌</u> <u>봄 서비스</u> 를	④ 지정 <u>아이돌</u> <u>봄서비스</u> 제공기관은 아

		<u>제공하는 중</u> <u>발생한 안전</u> <u>사고로 인하</u> <u>여 생명·신</u> <u>체에 피해를</u> <u>입은 아이돌</u> <u>보미와 아이</u> <u>에게 보상하</u> <u>기 위하여 미</u> <u>리 손해배상</u> <u>책 임 보 험 에</u> <u>가입하고 그</u> <u>밖에 안전에</u> <u>필요한 조치</u> <u>를 취하여야</u> <u>한다.</u>	<u>이돌봄서비스</u> <u>를 제공하는</u> <u>중 발생한 안</u> <u>전사고로 인</u> <u>하여 생명·</u> <u>신체에 피해</u> <u>를 입은 아이</u> <u>돌봄사와 아</u> <u>이에게 보상</u> <u>하기 위하여</u> <u>미리 손해배</u> <u>상 책임보험</u> <u>에 가입하고</u> <u>그 밖에 안전</u> <u>에 필요한 조</u> <u>치를 취하여</u> <u>야 한다.</u>
⑤ ~ ⑦ (생략)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⑤ ~ ⑦ (법률 제20932호와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광역시</u> <u>원센터는</u> 소 속 <u>아이돌보</u> <u>미와 표준근</u>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광역시</u> <u>지원센터는</u> 소속 <u>아이돌</u> <u>봄사와 표준</u>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서비</u> <u>스기관은----</u> ----- -----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지정</u> <u>아이돌봄서비</u> <u>스제공기관은</u> -----

로 계 약 서 를 작 성 하 여 야 한다. ② (생 략)	근로계약서를 작 성 하 여 야 한다. ② · ③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 ----- -----. ② · ③ (법률 제 20932호와 같음) 부 칙 (개정안과 같 음)
--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057
----------	------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개정안 회부(2024년 6월 28일) 이후인 2025년 4월 22일 개정되어 2026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

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는”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 (생략) ③ <u>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u> ④ (생략)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 한 범죄경력조회) ① (생략)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u>제10조 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 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 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 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 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u>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 한 범죄경력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u>----- ----- ----- ----- ----- ----- ----- ----- -----

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제10조의2(건강진단) ①·② (생략)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건강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된다.

④ (생 략)

제10조의4(아이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생 략)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
----- 아이돌봄사-----

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u><신 설></u>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u> <u>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u> <u>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u> <u>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u> <u>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보상하</u> <u>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u> <u>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u> <u>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u> <u>다.</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봄</u> <u>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u> <u>여야 한다.</u> ② · ③ (생 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u>은 -----</u> <u>-----.</u> ② · ③ (현행과 같음)